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07. 12. 12. 2007구합27424]

【전문】

【원 고】

【피 고】서울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2007. 11. 14.

【주문】

]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7. 12. 31.생으로, 2001. 7. 12.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의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 나. 원고는 2000. 12. 29.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2. 12. 26. 지정업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명칭 1 생략)'{이하 '(명칭 1 생략)'이라 한다}로, 근무 부서를 '개발팀'으로, 담당 업무를 '액티브튜터 개발(소프트웨어 개발)'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게 2005. 11. 13.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이하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07. 3.경부터 시작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속칭 병역특례비리 수사 결과, 원고의 숙부 소외 1, (명칭 1 생략)의 대표이사인 소외 2, 이사인 소외 3 등이 원고의 위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그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의 숙부 소외 1은 (명칭 1 생략)대표이사 소외 2,이사 소외 3 등에게 소프트웨어개발능력이 없는 원고를 위 회사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명칭 2 생략){이하 '(명칭 2 생략)'이라 한다}가 마치(명칭 1 생략)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칭 1 생략)에 물품 대금으로 가장한 금27,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명칭 2 생략)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명칭 1 생략)대표이사 소외 2,이사소외 3 등은 위와 같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원고를 지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4. 6.23.부터 복무 만료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일과 중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것이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이에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 7. 18. 원고에게 2007. 8. 6. 13:00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현역병입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유】

1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7. 12. 31.생으로, 2001. 7. 12.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의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 나. 원고는 2000. 12. 29.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2. 12. 26. 지정업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명칭 1 생략)'{이하 '(명칭 1 생략)'이라 한다}로, 근무 부서를 '개발팀'으로, 담당 업무를 '액티브튜터 개발(소프트웨어 개발)'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게 2005. 11. 13.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이하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 그런데 2007. 3.경부터 시작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속칭 병역특례비리 수사 결과, 원고의 숙부 소외 1, (명칭 1 생략)의 대표이사인 소외 2, 이사인 소외 3 등이 원고의 위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그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의 숙부 소외 1은 (명칭 1 생략)대표이사 소외 2,이사 소외 3 등에게 소프트웨어개발능력이 없는 원고를 위 회사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명칭 2 생략)(이하 '(명칭 2 생략)'이라 한다)가 마치(명칭 1 생략)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칭 1 생략)에 물품 대금으로 가장한 금 27,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명칭 2 생략)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명칭 1 생략)대표이사 소외 2,이사소외 3 등은 위와 같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원고를 지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4. 6.23.부터 복무 만료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일과 중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위와 같은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것이었다.
- 라. 이에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 7. 18. 원고에게 2007. 8. 6. 13:00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현역병입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7. 12. 31.생으로, 2001. 7. 12.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의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 나. 원고는 2000. 12. 29.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2. 12. 26. 지정업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명칭 1 생략)'{이하 '(명칭 1 생략)'이라 한다}로, 근무 부서를 '개발팀'으로, 담당 업무를 '액티브튜터 개발(소프트웨어 개발)'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게 2005. 11. 13.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이하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 그런데 2007. 3.경부터 시작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속칭 병역특례비리 수사 결과, 원고의 숙부 소외 1, (명칭 1 생략)의 대표이사인 소외 2, 이사인 소외 3 등이 원고의 위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그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의 숙부 소외 1은 (명칭 1 생략)대표이사 소외 2,이사 소외 3 등에게 소프트웨어개발능력이 없는 원고를 위 회사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부정한 창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명칭 2 생략)(이하 '(명칭 2 생략)'이라 한다)가 마치(명칭 1 생략)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칭 1 생략)에 물품 대금으로 가장한 금27,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명칭 2 생략)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명칭 1 생략) 대표이사 소외 2,이사소외 3 등은 위와 같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원고를 지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4. 6.23.부터 복무 만료시까지 정당한이유 없이 일과 중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위와 같은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것이었다.
- 라. 이에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 7. 18. 원고에게 2007. 8. 6. 13:00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현역병입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